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규정

제정 2013. 1. 21.

타규정개정 2015. 6. 5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제18조의1항에 규정된 종합 인력개발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종합인력개발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서는 학생의 생활과 취업 및 각종 진로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취업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조사, 연구와 기타 필요한 지원활동을 관장한다.
- 제3조(조직) ①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② 센터장은 센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를 대표한다.
  - ③ 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조직 및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4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학생경력 및 인성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
  - 2. 학생생활 및 경력개발에 대한 각종 조사, 자료 분석 및 연구 활동
  - 3. 학생경력 및 인성개발에 관한 프로그램 기획, 교육, 홍보, 자료 및 정보제공

- 4. 학생경력개발을 위한 취업관련 행사지원 및 스터디활동 지원
- 5. 취업률 통계조사 ·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
- 6. 학생 개인·집단상담 및 심리·적성 검사 제공
- 7. 양성평등에 관한 업무 및 교육 수행
- 8. 기타 학생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내 외부 사업 운영
- 제5조(종합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)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합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6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종합인력개발센터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
  - 2. 종합인력개발센터에 관련된 규정의 제·개정
  -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- 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은 각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제8조(위원 임기)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0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  -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
으로 의결한다.

- 제11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.
- 제12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등록금, 국고보조금,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.(개정 2015. 6. 5.)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칙(제167호, 2013.1.2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(제283호, 2015. 6. 5.)

(대학회계 신설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등 일부개정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